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71 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정준호·이학영·임호선

이춘석 • 이강일 • 권칠승

윤호중 • 이기헌 • 김태선

김남근 · 김성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.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도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, 양수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 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써,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 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(안 제 3조의7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차주택 양도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7(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	제3조의7(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
무) (생 략)	무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
	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
	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
	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
	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「국세
	<u>징수법」 제108조에 따른 납세</u>
	증명서 및 「지방세징수법」
	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
	를 제시하여야 한다.